

(建 築 課)

'96. 주 요 업 무

〈 기본 방향 〉

1. 위법 건축물 근절
2.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주변환경 정비
3. 재해(사설)위험 시설물 정비
4. 건축허가·준공 업무 자료 전산화
5. 기존건축물 공부 이기계획

1. 위법건축물 근절

가. 상설점검 강화

- 대 상 : 건축사 조사대상 건축물
(단독주택,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
4층이하 2,000㎡미만)
- 점검반 편성운영 [반 장 : 건축1계장
반 원 : 4개반 8명 (건축직)]
- 점검시기 : 매분기 착공계 접수 및 사용검사된 건수의 30%를
다음분기초 점검
- 조 차 .
 - 위반사항 적출 [1 차 : 시정지시 및 시정촉구 지시
2 차 : 건축주고발, 단전, 단수, 단전화 조치의뢰
3 차 :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
- 건축사 행정조치 (감리자)

나. 장기미준공 정리

- 대 상 : 227건('94년도 허가분)
- 점검기간 : 1996. 4. 1 ~ 7. 30 (4개월)
- 점검방법 : 담당동별 조사 복명
- 조치계획
 - '94년도 대상건물 - 준공여부 확인
 - 미준공분
 - 1 차 : 시정지시
 - 2 차 : 건축주고발
 - 3 차 : 과태료부과

다. 위법 건축물발생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계도

- 대 상 : 건축주, 시공자, 건축사
- 방 법
 - 건축허가시 건축주에게 안내문 배포
 - 착공시 감리건축사에게 시공자로 하여금 허가도서대로 시공하도록 계도
 - 감리건축사는 건축주, 시공자가 위법할 경우 감리건축사 즉시보고 및 시정조치
- 현장순찰 및 감독강화
 - 담당구역을 주 1회이상 순찰하여 위법공사 조기발견 시정조치
 - 상설점검을 강화하여 위법건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

- 건축사 교육
 - 대 상 : 관내 등록된 건축사
 - 교육시기 : 분기별 1회
 - 교육내용
 - 건축민원 사전예방
 - 위법건축물 근절
 - 건축 부조리 방지
 - 관계법규 및 변경사항 교육
 - 교 육 자 : 도시정비국장 및 건축과장

2. 건축공사장안전관리 및 주변환경정비

- 대 상 : 관내 건축공사장
- 정비 및 안전관리사항
 - 공사장 주변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 설치
 - 철재파이프 비계사용 의무화
 - 지하굴토시 안전시설 설치
 - 분진방지시설 (세륜시설)
 - 도로무단점용 방지 (자재, 토사)
- 점검 및 정비
 - 정기점검 : 분기별 지역담당이 전수 점검
 - 수시점검 : 각종 검사시 (착공, 중간검사시)
- 조치사항
 - 1 차 :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
 - 2 차 : 시정촉구 지시 및 도로과다 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의뢰 (건설관리과)
 - 3 차 : 공사중지 명령 및 사직당국 고발

3. (재해)사설위험시설물 정비

- 대 상 : 사설축대, 옹벽, 담장, 건물등
- 일제조사
 - 정 기 : 년 2회 (해빙기, 우기)
 - 수 시 : 동사무소등 순찰 적발시 보고(통보)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
- 조 치
 - 위험시설물 관리카드 작성 -- 기록보존
 - 매건별 관리책임자 지정보수 독려
 - 불이행시 : 고발 및 단전, 단수 조치 등 사용제한

4. 건축허가·준공 대장 전산화

가. 현 황

- 건축허가·준공 현황 입력
 - 대 상 : '96년도 건축허가·준공현황 전산자료 입력
 - 내 용 : 건축주, 설계자, 대지조건, 용도, 규모, 구조, 준공일시, 오수정화시설 등 전산입력

5. 기존건축물공부 이기계획

가. 사업규모

-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 규칙에 의한 통합서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기존건축물 공부(건축물관리대장, 구건축물대장, 가옥대장등)
 - 총 대상 : 66,661건
 - '96년도 예상 작업물량 : 약 1,400건(시범 실시)

나. 사업기간 : '96년 4월 ~ '96년 11월(약 8개월 소요예상)

다. 사업비 : 1억6천1백만원 (당초 5억3천7백만원)

라. 내 용

- 당해 건축물의 표제부 및 배치도, 각종 평면도, 부설주차장의
도면 작성
- 건축물 사용검사 이후의 변동사항(소유권, 용도변경, 증·개축등)에
대하여 조사하여 현재상태와 일치하도록 작성